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 이유

- ◇ '97. 8월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
- ◇ 따라서 기존의 「간이상수도 관리 표준조례('95. 4)」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 제명을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함
-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로 구분하여 관리함
- ◇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3조)
-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제6조 및 제7조)
- ◇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3. 참고 사항

- ◇ 수도법 제32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구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지역의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 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